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지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원주소방서장



- 제 목 : 「화재예방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관련법규 : 가. 화재예방법 제34조 제1항 제2호(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기간 : 2026. 6. 10. - 2026. 7. 13. (33일간)

4. 공고대상

이름	송달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허* (이름프라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사로 10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수취인 미지수	500,000원	15,000원

5. 공고내역

- 공고 대상자는 **2026. 7. 13. 전까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3-769-122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는 현재 체납으로 인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매 1개월마다 1.2% 증가산금(최고 72% : 60개월)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상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진민경(033-769-1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